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행법상 차별행위 개념에 ‘괴롭힘 등’ 포함〉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4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29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4. 9. 25.
- (3) 회 부 일 : 2024. 9.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4조(차별행위)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차별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 ①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

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만약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개요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20100>)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2008년~2023년), 권고 건수는 810건, 시정명령 건수는 6건,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으로 파악됨(보건복지부 제출).

<관련 현행 법조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하생략.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50조(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하생략.

□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구제 요건인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개념에 같은 법 제3조제21호²⁾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 또는 관련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도 진정의 대상으로 보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상 처리 관행을 반영하여 ‘괴롭힘 등’을 명확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현황 >

구분	2008. 4. 11. ~ 2023.12. 31.						
진정 (건)	고용	교육	재 화 · 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1,154 (6.4%)	1,685 (9.3%)	10,969 (60.6%)	453 (2.5%)	182 (1.0%)	1,859 (10.3)	1,790 (9.9%)
계	18,092건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조치로 인해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바, 국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집행기관에도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해 공포 후 일정 기간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 따라 ‘괴롭힘 등’이 차별행위가 된 경우, 시행일만으로는 진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어떠한 시점부터 적용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이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³⁾

3) 예를 들면,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진정 또는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등 법률상 권리구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도 진정의 대상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임.

- ‘괴롭힘 등’이 차별행위에 포함되는 등 개정안은 이러한 실무 관행이 반영되어 장애인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기여를 위해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나. 법제처

□ 괴롭힘 등에 속하는 행위 중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학대, 금전적 착취 등 일정한 유형의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개별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제3호·제11호·제12호 등

□ 일괄적으로 차별행위의 범위에 괴롭힘 등 행위를 추가할 경우 개념 및 처벌규정의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차별행위의 범위에 괴롭힘 등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 방식 외에,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장 및 제5장 등 필요한 조문에 한정하여 차별행위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09